

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436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5. 2. 27.

발 의 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위원회 설치에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와 기운영 중인 타 사례를 반영하여 위원회의 운영 횟수를 적정 수준인 “연 2회 이상”으로 수정함.
- 관련 법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으므로 하위 법규인 원안 또한 이를 반영하여 임의규정으로 수정함.
- 양각 규제는 풍납토성 외 타 지역과의 형평성,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 절차, 서울시의 규제완화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 등 많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으로서 당장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해당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함.

2. 수정주요내용

가. 위원회 개최 횟수를 “연 2회 이상”으로 명시함(안 제5조).

나. 주민지원사업을 임의규정으로 하고, 교통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가함(안 제6조).

다. 별표2의 국가유산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).

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
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제5항 중 “분기별 1회”를 “연 2회 이상”으로 한다.

안 제6조제1항 중 “수행하며,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”을 현행대로
하기 위하여 “수행할”로 한다.

안 제9조 중 “18조”를 “제18조”로 하고, “적용받지 아니한다”를 “완화하여
적용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5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~ ④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5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가지며, 위원장의 요청시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</u>	제5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~ ④ (개정안과 같음) <u>⑤ -----연 2회 이상-----</u> ----- ----- -----.
<u>⑤ (생략)</u>	<u>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</u>	<u>⑥ (개정안과 같음)</u>
제6조(주민지원사업) ① 시장은 풍납토성 인근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<u>수행할</u> 수 있다.	제6조(주민지원사업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수행하며,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</u> ----.	제6조(주민지원사업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수행할</u> ----.
1. ~ 6.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	1. ~ 10. (개정안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7. 풍납토성 인근지역의 보행 및 교통환경 개선 사업</u>	
<u><신 설></u>	<u>8. 풍납토성 인근지역</u>	

7.·8. (생략)

②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의 학교 및 교육환

경 개선 사업

9.·10. (현행 제7호
및 제8호와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시장과 송파구청
장은 보존관리 구역
내 시행하는 공공사
업 및 주민지원 사업
등에 풍납토성 인근
지역주민을 우선 고
용하도록 노력하여야
한다.

제9조(건축특례) 이주
대책 마련을 위한 건
설공사의 경우 「서
울특별시 국가유산
보존 및 활용에 관한
조례」 18조 등에도
불구하고 동 조례 별
표2 국가유산 주변
건축물 높이 기준을
적용받지 아니한다.

②·③ (개정안과 같
음)

제9조(건축특례) -----

----제18조-----

완화하여 적용할 수
있다.

<u>제9조</u> (생략)	<u>제10조</u> (현행 제9조와 같음)	제10조 (개정안과 같음)
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

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지며, 위원장의 요청시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풍납토성 인근지역의 보행 및 교통환경 개선 사업

8. 풍납토성 인근지역의 학교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

- ③ 시장과 송파구청장은 보존관리 구역 내 시행하는 공공사업 및 주민지원 사업 등에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를 제10조로 하고,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건축특례)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건설공사의 경우 「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 제18조 등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 별표2 국가유산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~ ④ (생략) <u><신설></u> ⑤ (생략)	제5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<u>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지며, 위원장의 요청시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</u>
제6조(주민지원사업) ① 시장은 풍납토성 인근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 1. ~ 6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7.·8. (생략)	제6조(주민지원사업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<u>풍납토성 인근지역의 보행 및 교통환경 개선 사업</u> 8. <u>풍납토성 인근지역의 학교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</u> 9.·10. (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)
② (생략) <u><신설></u>	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시장과 송파구청장은 보존관리 구역 내 시행하는 공공사업 및 주민지원 사업 등에 풍납토성 인근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

<신 설>

제9조 (생 략)

제9조(건축특례) 이주대책 마련을
위한 건설공사의 경우 「서울특별
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
조례」 제18조 등에도 불구하고 동
조례 별표2 국가유산 주변 건축물
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
있다.

제10조 (현행 제9조와 같음)